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-75호

당산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59호(2007.08.02.)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-1 일대 당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하고,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27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구역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당산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)

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
당산 제4구역 재개발 구역	영등포구 영신로 235(당산2동 4가 2-1번지)일대	11,957.80	증) 58.3	12,016.1	변경

다. 정비계획 변경 내용

1)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11,957.80	증) 58.3	12,016.10	100.0	
정비 기반 시설 등	소계	1,563.00	증) 11.0	1,574.00	13.10	
	도로	1,167.00	증) 11.0	1,178.00	9.80	•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•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면적 - 정비구역내 기존 도로면적 + 공장용지20% : 1,167.00㎡
	공원	396.00	-	396.00	3.30	
택지 (획지)	소계	10,394.80	증) 47.3	10,442.10	86.90	
	공동주택 용지	10,394.80	증) 47.3	10,442.10	86.9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2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

가) 도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나) 공원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다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(변경)

구 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부대시설	관리사무소	지하1층/북측	994.21	-	994.21	변경 없음
복리시설	주민운동시설	지하1,2층/북동측				
복리시설	경로당	지상1층/남측	110.50	증) 0.37	110.87	변경
복리시설	주민공동시설	지하1,2층/중앙	810.23	-	810.23	변경 없음
복리시설	근린생활시설,	지상층/남동측	885.32	-	885.32	변경 없음
복리시설	어린이놀이터	지상층/동측	445.79	증) 0.07	445.86	변경
부대시설	지하주차장	지하1,2층/전체	13,845.87	증) 224.84	14,070.71	변경

3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나) 건축시설계획 (변경)

□ 기정

결정 구분	구 분		위 치	주된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	높이(m)
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개발가능	
기정	택지	10,394.8	영등포구 영신로 235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16.76%	219.65%	219.70%	74.25m /26층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구 분		기정			
					분양주택		비율(%)	
			합 계		198	100.0		
			전용 60㎡이하		-	-		
			전용60㎡~85㎡이하		198	100.0		
			전용85㎡초과		-	-		
			연면적 85㎡이하 구성비(%)		100.0%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건축법,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					

□ 변경

결정 구분	구 분		위 치	주된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	높이(m)
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개발가능	
변경	택지	10,442.1	영등포구 영신로 235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16.68%	218.65%	219.65%	74.25m /26층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구 분		변경			
					분양주택		비율(%)	
			합 계		198	100.0		
			전용 60㎡이하		-	-		
			전용60㎡~85㎡이하		198	100.0		
			전용85㎡초과		-	-		
			연면적 85㎡이하 구성비(%)		100.0%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건축법,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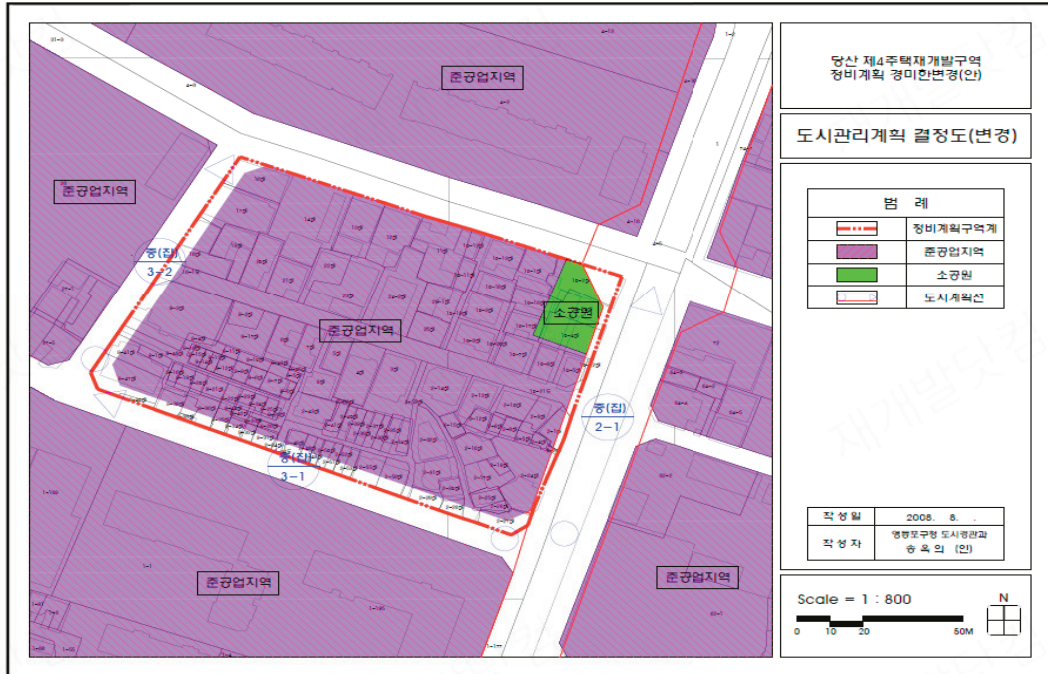
4) 정비사업 시행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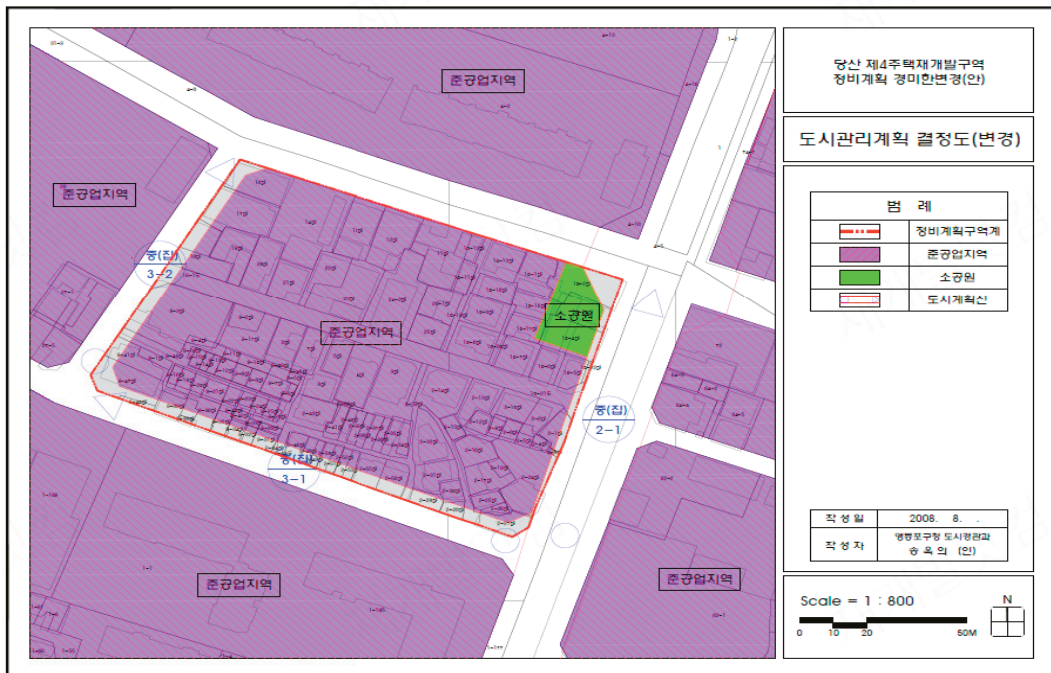
2. 관련 도면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□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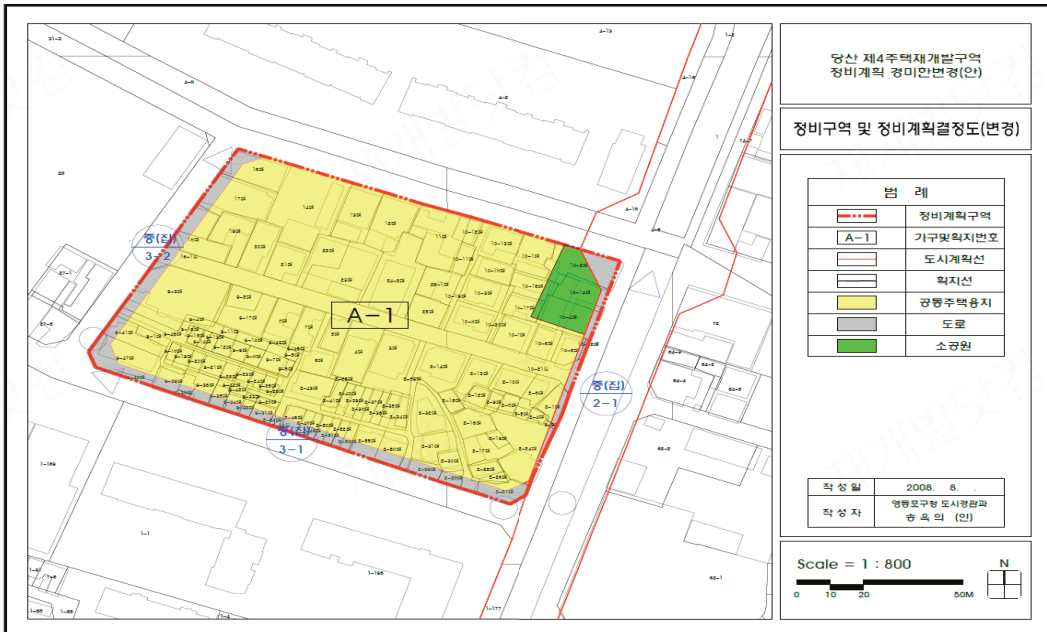


□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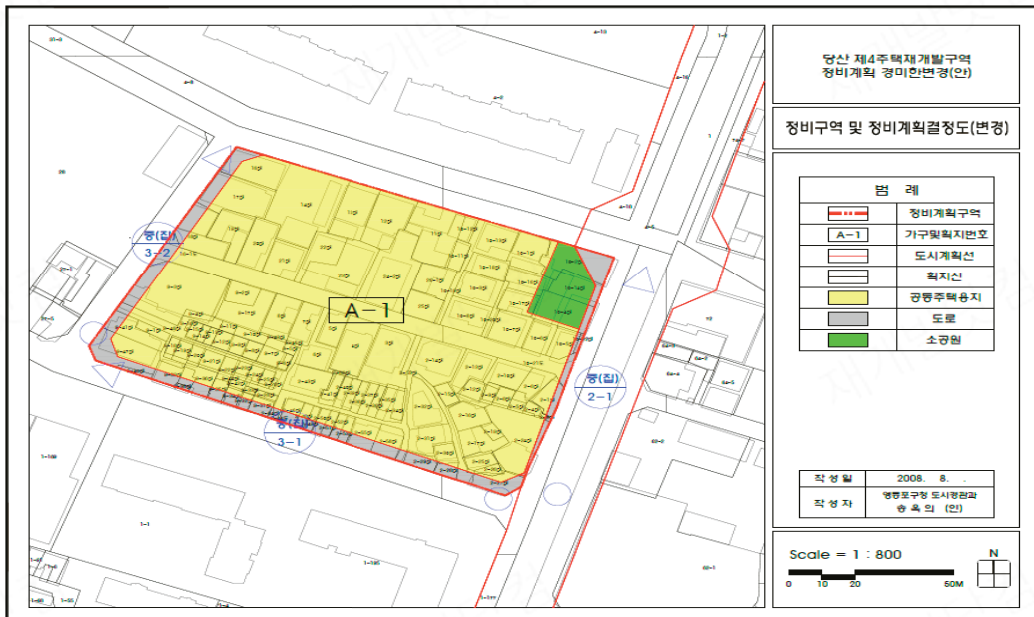


나. 정비구역(계획) 결정도

□ 기정



□ 변경



3. 고시 및 관련도면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택과 (☎2670-3660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